

공급업체 행동 강령

적용 범위, 목적 및 적용 대상

당사의 행동 강령은 국내 및 국제 법률, 지침, 규정뿐만 아니라 유엔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 및 기업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 국제노동기구의 국제 노동 기준, 유엔 글로벌 콤팩트와 같은 국제 협약(모두 수시로 개정된 내용 포함)을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적 청렴성을 바탕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행동하는 것은 당사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의 기초입니다.

HOERBIGER 계열사(이하 “HOERBIGER”)는 동일한 가치, 원칙 및 향후 성장 목표를 공유하는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 여기서는 각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추구합니다. HOERBIGER는 공급업체(“공급업체”, 이하 “해당 공급업체”)가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강령”)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킬 것을 기대합니다. HOERBIGER와 비즈니스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공급업체는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 법률 및 규정 준수

공급업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국가의 모든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각 관할 지역에서 HOERBIGER 계열사가 지는 법적 의무를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공급업체는 HOERBIGER의 규정 준수 의무를 지원하고, HOERBIGER가 요구하는 관련 정보와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II. 인권

공급업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보호를 존중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 직원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근무 환경은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장애, 건강 상태, 민족, 국적, 종교, 사회적 출신 또는 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존엄성, 사생활 및 개인의 기본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III.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공급업체는 모든 형태의 현대 노예제도를 배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의 운영은 물론 협력업체의 운영에서도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IV. 근로 조건

공급업체는 법률 또는 규정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임금, 복리후생 및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해당 근로시간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업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 해야 합니다.

V. 분쟁 광물

공급업체는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 및 이에 근거하여 해당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텅스텐, 탄탈륨 또는 금이 국가 또는 비국가 무장 단체나 불법 보안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분쟁, 자금 세탁 또는 인권 침해에 기여하는 광산에서 조달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분쟁 광물에 대한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HOERBIGER에 제공해야 합니다.

VI. 부패 방지 및 뇌물 방지

공급업체는 모든 형태의 부패, 뇌물 수수 및 기타 부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 공직 후보자,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그 관련자에게 뇌물이나 업무 촉진금을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수락해서도 안 됩니다. 공급업체의 반부패 정책 및 관행은 거래와 관련된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VII.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공급업체는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를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위험기반의 적절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업의 최종 실질 소유자 확인 및 자금 출처 확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VIII. 수출 통제 및 제재

공급업체는 HOERBIGER와의 모든 종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UN 및 OSCE(유럽안보 협력기구)의 수출입 통제법, 경제 제재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HOERBIGER에서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재료 또는 제품 구성, 관세 분류(HS CODE) 및 수출입 허가 요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HOERBIGER에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수출 허가서 또는 기타 정부 승인,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IX. 경쟁법

공급자는 경쟁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또는 시장 분할과 같은 반경쟁적 사업 관행이 포함됩니다.

X. 지적 재산권

공급업체는 비밀유지계약(NDA), 접근 권한 제한, 최신 수준의 IT 보안 조치 등 적절한 계약적, 조직적 및 기술적 수단을 통해 HOERBIGER의 기술 및 독점 정보를 무단 사용, 접근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XI.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공급업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HOERBIGER의 정보 시스템 또는 통신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이를 지체 없이 HOERBIGER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또는 의심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HOERBIGER의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 경우, 공급업체는 즉시 HOERBIGER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XII. 환경

공급업체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적용되는 모든 환경 관련 법률, 규정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대기, 수질, 토양, 식물, 동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사업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XIII. 공급망 준수

공급업체는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의 원칙을 자사의 공급업체에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원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XIV. 준수 위반 사례 보고

공급업체는 자사 운영 또는 공급망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준수 위반 사례나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 위반 사항에 대해 HOERBIGER 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는 compliance@hoerbiger.com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HOERBIGER 의 사업과 관련된 규정 위반 사항을 HOERBIGER 신고 채널(<https://hoerbiger.integrityline.app/>)을 통해 신고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XV. 감사

공급업체는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OERBIGER 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공급업체의 시설, 직원 및 관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확인 및 서명

본인은 공급업체의 법적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입니다.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당사는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_____

회사 주소: _____

사업자등록 번호: _____

성명: _____

직위: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장소 및 날짜: _____

대표자 서명: _____